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기획재정위원회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정부제출(의안번호 제3528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4
1. 부가가치세 면세	4
가. 개요	4
나. 질병치료 목적의 동물 혈액 부가가치세 면제(박홍근의원안, 정부안)	9
2.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 조정 등(김영환의원안, 정부안)	13
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박홍근의원안, 정부안)	21
4. 조세포탈사업자 대상 부가가치세 수시부과 근거 신설 (박홍근 의원안, 정부안)	26
5.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강화(박홍근의원안, 정부안) ...	29

I. 개요

1. 정부안(의안번호 제3528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정부
- (2) 제 안 일 : 2024. 9. 2.
- (3) 회 부 일 : 2024. 9. 3.

나. 제안이유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치료·예방·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 공급을 추가하고,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율을 하향 조정하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기한을 연장하고,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부가가치세를 수시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가. 동물의 혈액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안 제26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치료·예방·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 공급을 추가함.

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율 조정(안 제46조제1항제3호)

소매업·음식점업 등 주로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중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율을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퍼센트(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에서 ‘0.5퍼센트(2026년 12월 31일까지는 0.65퍼센트)’로 조정함.

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기한 연장(안 제47조제1항 및 제63조제4항)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등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라. 수시부과 제도 신설(안 제57조의2 및 제68조제2항 신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은 사업자가 과세기간 중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그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마.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율 상향 조정(안 제60조제1항제2호 및 제68조의2제1항)

명의위장 사업자인 일반과세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에서 ‘2퍼센트’로, 명의위장 사업자인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0.5퍼센트’에서 ‘1퍼센트’로 상향 조정함.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부가가치세 면세

가. 개요

□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6조¹⁾는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및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수돗물, 여성용 생리용품, 의료보건 용역과 혈액, 교육용역 등 주로 기초적인 생활필수품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저소득층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일반적인 면세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²⁾는 서민생활의 지원 및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수돗물
3. 연탄과 무연탄
4.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5. 의료보건 용역(수익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및 제12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5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며, 제9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9호의3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한다.

1.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할 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전기공급이 곤란한 도서(島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같은 법 제98조에 따라 위임을 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이 증명하는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음식용역(식사료로 한정한다). 이 경우 위탁급식 공급가액의 증명 등 위탁급식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라. (생략)
3.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4의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

농어촌 지원 등 사회정책적 또는 경제정책적 목적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를 규정하면서 일몰기한을 두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음.

서 “관리주체”라 한다),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건물위생관리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청소업자”라 한다)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가.~나. (생략)

4의3. 관리주체, 경비업자 또는 청소업자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4의4.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이하 이 호에서 “노인복지주택”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자, 경비업자 및 청소업자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4의5.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

5.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배출권과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상쇄배출권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이하 이 호에서 “철도시설”이라 한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는 방식으로 국가에 공급하는 철도시설

7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8. 교육부장관의 추천이나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건설한 학교시설(「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학교가 제공하는 시설관리운영권 및 그 추천을 받은 자가 그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8의2.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설립한 특수 목적 법인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건설한 기숙사에 대하여 국가 및 지자체가 제공하는 시설관리운영권 및 그 법인이 그 기숙사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8의3. 다음 각 목의 법인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방식을 준용하여 건설한 기숙사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호에서 “학교”라 한다)가 제공하는 시설관리운영권 및 그 법인이 그 기숙사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가.~나. (생략)

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버스로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

9의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버스

가.~나. (생략)

9의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

10. 「관세법」 제91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물품 중 희귀병치료등을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1.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액상 형태의 분유를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분유는 제외한다)

12. 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난방용 또는 농업용·임업용으로 공급하는 목재펠릿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같은 법 제43조의4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을 행사하거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 이행으로 인한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처분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담보 대상주택

□ 한편,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수출하는 재화, 외국에서 공급되는 용역 등에 예외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21조부터 제24조³⁾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 외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⁴⁾에서 방산물자, 군납용 석유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제23조(외국항행용역의 공급) 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1.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교공관등”이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방산업체가 공급하는 같은 법에 따른 방산물자(경찰이 작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생산공급하는 시제품(試製品) 및 자원 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
2.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군인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군 골프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석유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제106조제1항제7호의2에 따라 공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다.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 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 마.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 3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

류,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과 그 건설용역, 장애인용 보장구, 농어민에게 공급하는 농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 부가가치세의 면세제도와 영세율 제도의 차이는 다음과 같음.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전단계 세액공제방식을 적용할 수 없음. 면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제하되 면세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므로 면세사업자는 이를 면세재화 또는 면세용역을 공급할 때 가격에 포함시켜 거래 상대방에게 전가할 수 있음(이론상 ‘부분면세’).

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제도는 사업자의 납세의무가 있으나 부가

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4.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연원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나.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라.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마.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 바. 산림의 보호와 개발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가치세율을 ‘0’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면세와는 달리 전(前)단계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는다는 점에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완전히 제거되고 거래상대방은 부가가치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됨(이론상 ‘완전면세’).

[부가가치세 면세 및 영세율 제도]

구분	영세율	면세
기본원리	일정한 과세거래에 0% 세율을 적용 ① 공급받는 자는 거래징수를 면함 ② 매입세액 전액 환급	일정한 과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면제 ① 거래징수 없음 ② 매입세액 환급되지 않음
성 격	완전면세	부분면세
취 지	소비지국 과세원칙 구현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완화
적용범위	수출 등에 적용	기초생활품 등에 적용
사업자 협력의무	영세율 사업자도 납세의무자이므로 각종 협력의무 존재	면세사업자는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각종 협력의무를 지지 않음.

자료: 「세법개론(2024)」, 임상엽·정정운

[일반 과세사업자, 영세율사업자 및 면세사업자의 납부세액 계산 예시]

일반 과세사업자	영세율사업자	면세사업자
$100+10 \rightarrow \boxed{A} \rightarrow 120+12$ 매출세액 $120 \times 10\% = 12$ 매입세액 $\frac{(10)}{2}$ $\downarrow$ 납부	$100+10 \rightarrow \boxed{A} \rightarrow 120+0$ 매출세액 $120 \times 0\% = 0$ 매입세액 $\frac{(10)}{(10)}$ $\downarrow$ 환급	$100+10 \rightarrow \boxed{A} \rightarrow 130^{*}+0$ 매출세액 - 매입세액 - $\downarrow$ 환급 ×

※ $120+10=130$, 면세사업자는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10을 최종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음.

자료: 「세법 워크북(2024)」, 이철재·정우승·유은중

나. 질병치료 목적의 동물 혈액 부가가치세 면제(박홍근
의원안, 정부안)

현 행	개정안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제26조제1항) ☐ 미가공식료품, 수돗물, 연탄과 무연탄,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 의료보건 용역 및 혈액 ☐ 교육 용역, 여객운송 용역 등	☐ 면세 대상에 질병치료 목적의 동물 혈액 추가 ☐ (현행과 같음) ☐ 의료보건 용역 및 혈액(치료·예방·진단 목적의 동물 혈액 포함) ☐ (현행과 같음)

* 박홍근의원안 2024. 10. 28. 발의(의안번호 4961), 정부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28)

☐ 개정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혈액의 범위에 치료·예방·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을 포함시키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긍정적인 취지가 있음.

첫째, 최근 증가하고 있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의 반려동물 병원비용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020년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는 총 313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약 15% 수준⁵⁾으로 나타났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2023년 신규로 등록된 반려동물은 27만 1,173마리, 2023년까지 누적등록된 반려동물은 328만 6,216마리로

5) 2020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반려동물 양육가구를 638만가구로 추정(2019년 대비 47만 가구, 8.0% 증가)한 바 있으나, 2020년 인구총조사(통계청)에서는 반려동물 양육가구를 313만 가구로 발표하였고, 2021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서는 해당 항목을 조사하지 않음.

2021년 이후 누적등록된 반려동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연도별 반려동물 신규등록 및 누적등록 현황]

(단위: 마리)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반려동물 신규등록 현황	510,004	302,597	271,173
반려동물 누적등록 현황	2,782,811	3,054,342	3,286,216

자료: 2023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 농림축산검역본부

또한, 농림축산식품부⁶⁾에 따르면, 2023년 반려동물 마리당 월 평균 양육비용은 반려견이 16.61만원, 반려묘가 11.28만원이었으며, 이 중 병원비는 반려견이 평균 6.02만원, 반려묘가 3.37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치료 등을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반려동물의 병원비용을 일부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2023년 10월부터 치료 등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진료용역도 사람에 대한 의료보건 용역과 마찬가지로 면세대상에 포함⁷⁾되

6) 2023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농림축산식품부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제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5.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동물의 진료용역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료용역으로 한정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료용역 외에 질병 예방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진료용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제2조(부가가치세 면제대상 동물의 진료용역) ①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 목적의 진료용역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찰 및 입원관리
2. 접종 및 투약(완제품 형태의 제제를 동물병원 내 단순 구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검사
4. 증상에 따른 처치
5. 질병의 예방 및 치료행위(「수의사법」 제20조의3에 따라 표준화된 분류체계가 작성·고시된 질병에 대해서는 해당 예방 및 치료행위에 대해 적용한다)

고 있으며, 치료용·예방용·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無稅)⁸⁾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세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면세제도의 취지는 사업자의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최종소비자의 조세부담을 줄여 조세 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면세대상은 주로 기초생활필수품 또는 국민후생용역 등에 국한하고 있음.

둘째, 현재에도 면세품목이 다른 OECD 국가에 비하여 과다한 측면이 있어 면세 범위를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치료 이외의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2011년), 자동차운전학원(2012년), 135㎡를 초과하는 공동주택 관리용역(2014년), 국가가 제공하는 부동산임대업과 도·소매업(2018년) 등을 면세대상에서 제외한 사례가 있음.

8)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외에 관세가 무세(無稅)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27조제1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화로 한다.

22. 그 밖에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과 관세의 협정세율이 무세인 철도용 내연기관, 디젤기관차 및 이식용 각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3]

면제하는 품목(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의 분류표(제43조 관련)

구분	관세율표 번호	품명
6. 의료용품	3002	⑥ 동물의 피(치료용·예방용·진단용으로 조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문 의 처

02)6788-5160

2.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 조정 등 (김영환의원안, 정부안)

현 행	김영환의원안	정부안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제46조제1항) ○ 공제대상자 - 영수증 발급 대상 개인 사업자로서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10억원)</u>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제외 -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 - 신규 간이과세자 ○ 공제대상금액: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발급금액 ○ 공제율: <u>1.0%</u> ※ 2026.12.31.까지 1.3% ○ 연간 공제한도: 500만원 - 특례: 2026.12.31.까지 1천만원	☐ 세액공제의 공제율 조정 및 공제한도 삭제 등 ○ 공제대상자 - 영수증 발급 대상 개인 사업자로서 직전 연도 공급가액 <u>1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제외</u> ※ 매출기준 법률 규정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 공제율: <u>1.3%</u> ○ 연간 공제한도: <u>1천만원</u>	☐ 공급가액 5억원 초과 사업자에 대한 공제율 조정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공제율 -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u>대통령령(5억원)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자: 0.5%</u> ※ 2026.12.31.까지 <u>0.65%</u> - 그 밖의 사업자: 1.0% ※ 2026.12.31.까지 1.3% ○ (현행과 같음)

* 김영환의원안 2024. 10. 25. 발의(의안번호 4918), 정부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28)

□ 2건의 개정안은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활용해 대금을 결제받은 영수증 발급대상 개인사업자로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의 공제율 등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정부안은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에게는 0.5%(2026년 12월 31일까지는 0.65%)의 하향조정된 공제율을 적용하고, 그 밖의 사업자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1.0%(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3%)의 공제율을 적용하려는 것이고,

김영환의원안은 현재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액공제 대상자의 공급가액 기준(10억원)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한편,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공제율(1.3%)과 공제한도(1,000만원)에 대한 적용기한을 삭제하여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하의 사업자에 대하여는 1.3%의 공제율과 1,000만원의 공제한도를 적용받도록 하는 조세특례를 영구화하려는 것임.

□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46조9)에서는 숙박업·음식점업·소매업 등

9) 「부가가치세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증빙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를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1. 사업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한다)

나.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

2. 거래증빙서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공제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하되,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퍼센트(2023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로 한다)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 및 간이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영수증 등을 발급하거나 전자화폐로 대금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발급 또는 결제금액의 1.0%(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3%)를 연간 500만원을 한도(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1천만원)로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 동 제도는 1994년 정부의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사업자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처음 시행되었는데, 신용카드를 결제하는 경우 사업자가 신용카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고 세원이 포착되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었음.

세액공제율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면, 제도 도입 당시에는 신용카드매출금액의 0.5%를 공제하였고, 1996년 1%, 2000년 2%로 공제율이 인상되었다가 2004년에 다시 1%로 축소되었음. 2005년에는 음식점업과 숙박업이 침해된 상황임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공제율이 1.5%로 인상되었음.

2008년에는 음식점업,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2%, 그 외에는 1%의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되 2009년에는 한시적으로 우대공제율(음식점업·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2.6%, 그 외의 경우 1.3%)이 적용되도록 하였음. 이후 우대공제율의 적용기한이 2년씩 총 4회 연장되었음.

2018년에는 공제한도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연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우대공제율의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였음. 2021년부터 우대공제한도와 우대공제율 모두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되었고, 2023년에는 우대공제한도와 우대공제율 모두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되었음.

2021년 7월부터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간이과세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공제율도 일반 개인사업자와 같이 1.3%로 조정하였음.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제도 연혁]

구분		1994 ~ 1995	1996 ~ 1998	1999	2000 ~ 2003	2004	2005 ~ 2007	2008	2009 ~ 2012	2013 ~ 2018.1기	2018.2기 ~ 2021.1기	2021.2기 ~
공 제 율	개인사업자	0.5%	1%	1%	2%	1%	1%		(기)1.0% (우)1.3%	(기)1.0% (우)1.3%	(기)1.0% (우)1.3%	(기)1.0% (우)1.3%
	음식·숙박 간이과세자						1.5%	2%	(기)2.0% (우)2.6%	(기)2.0% (우)2.6%	(기)2.0% (우)2.6%	
공제 한도	기본	-	-	300만원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우대	-	-	-	-				700만원	-	1천만원	

자료: 기획재정부

2022년 기준 동 제도의 적용대상자는 238만명이고, 이에 따른 세액 공제 규모는 3.0조원 수준임¹⁰⁾.

10) 자료: 기획재정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지원 규모]

(단위: 만명, 억원)

연도	구분	일반과세자(개인)			간이과세자			합계
		음식숙박	기타	계	음식숙박	기타	계	
2018년	인원	50.5	78.1	128.6	17.1	45.6	62.7	191.3
	금액	10,681	9,161	19,842	393	1,084	1,477	21,319
2019년	인원	53.0	82.3	135.3	17.3	49.1	66.4	201.7
	금액	11,848	9,919	21,767	423	1,214	1,637	23,404
2020년	인원	54.2	84.9	139.1	16.4	46.9	63.3	202.4
	금액	11,270	10,375	21,645	409	1,096	1,505	23,150
2021년	인원	48.7	83.8	132.5	21.0	50.6	71.6	204.1
	금액	11,764	10,804	22,568	1,208	1,634	2,842	25,411
2022년	인원	52.4	93.3	145.7	30.8	61.5	92.3	238.0
	금액	14,279	11,349	25,628	2,129	2,086	4,215	29,843

주) 인원은 2기 기준

자료: 국세통계연보

- 공급가액의 규모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 조정하려는 정부안과, 공급가액 10억원 이하의 사업자에 대하여 1.3%의 공제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김영환의원안은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의 필요성에 관하여 정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 먼저,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제도를 축소해야 한다는 정부안의 논거로는 아래와 같은 의견이 제시될 수 있음.
- 첫째, 동 제도를 운영하면서 신용카드 등의 사용이 보편화되었고, 현금영수증 수취 문화의 정착 등이 이루어져 과세표준의 양성화가

상당 부분 진척되어 세제혜택을 통한 과표 양성화의 유인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것임.

2023년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이루어진 결제는 약 2,861만건에 달하며, 결제금액은 약 1,263조원으로 2017년에 비해 결제 건수는 약 92.7억건, 결제금액은 약 389조원 증가하였음. 또한,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거래 건수도 2022년 기준 약 4,500건 수준이고, 관련 거래액도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연도별 신용카드 등 결제 현황]

(단위: 천건, 십억원)

연도	2001년	2007년	2012년	2017년	2022년	2023년
건수	1,009,462	4,017,248.1	10,069,586.2	19,341,790.9	26,810,202.3	28,608,422.5
금액	229,951.4	423,063.4	648,263.9	874,205.4	1,192,119.0	1,262,875.4

* 신용카드 등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현금IC카드를 포함
자료: 「지급수단별 통계」,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 및 발급건수]

(단위: 억원, 백만건)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발급금액	1,164,639	1,185,761	1,230,447	1,420,393	1,562,471
발급건수	4,530	4,508	4,132	4,327	4,476

자료: 「9-3-3. 현금영수증 발급 현황 I (지역, 업태, 발급금액)」, 국세통계포털(TASIS)

둘째,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의 조세지출 규모는 2023년 기준 3조 71억원으로, 동 특례와 관련한 조세지출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2025년 3조 2,179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음.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조세지출 규모]

(단위: 억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망)	2025년 (전망)
조세지출 규모	19,125	22,570	23,473	22,995	26,658	30,071	33,328	32,179

자료: 각 연도 조세지출예산서

□ 반면,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김영환의원안의 논거로 아래와 같은 의견이 제시될 수 있음.

첫째, 동 제도는 과표 양성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일정 부분 보전함으로써 해당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임.

[영세 중소가맹점 기준 및 가맹점 수수료율(2022년 1월 기준)]

영세 중소가맹점 기준	가맹점 수수료율	
	신용카드	체크카드
영세 :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 0.5%	영세 : 0.25%
중소1: 연매출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중소1: 1.1%	중소1: 0.85%
중소2: 연매출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중소2: 1.25%	중소2: 1.0%
중소3: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중소3: 1.5%	중소3: 1.25%

자료: 2022 조세특례 심층평가

둘째, 내수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소상공인 등의 대출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하는 등 경영악화가 지속되고 있으며¹¹⁾, 코로나19 지원정책 등의 영향으로 2020년~2022년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던 개인사

11) 자영업자 대출연체율(%): (2021. 4/4분기) 0.5, (2022. 4/4분기) 0.6 (2023. 4/4분기) 1.3 (2024. 1/4분기) 1.5
(출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2024. 7., 관계부처 합동)

업자의 폐업률이 2023년 이후 상승 추세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개인사업자 폐업자 및 폐업률 추이]



자료: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2024. 7., 관계부처 합동(국세통계 재구성)

문 의 처

02)6788-5160

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박홍근의원안, 정부안)

현 행	개정안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제47조제1항 및 제63조제4항) ○ 적용대상 - 직전연도 공급가액 또는 사업장별 총수입 금액 3억원 미만 개인사업자 - 신규 개인사업자 - 간이과세자 ○ 공제방식: 부가가치세에서 공제 ○ 공제금액: 건당 200원(연간 100만원 한도) ○ 적용기한: 2024년 12월 31일까지	☐ 적용기한 연장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2027년 12월 31일까지

* 박홍근의원안 2024. 10. 28. 발의(의안번호 4961), 정부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22)

☐ 2건의 개정안은 직전연도 공급가액 또는 사업장별 총수입 금액 3억원 미만의 개인사업자,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 및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임.

☐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2항¹²⁾은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

1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①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그 이후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이 8천만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이와 함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 활성화를 위하여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원 미만의 개인사업자 등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장에게 그 명세서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송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 당 2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되, 그 한도를 연간 100원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두고 있음.

- 부가가치세 제도 도입 이후 사업자는 (종이)세금계산서의 수동 작성, 신고·보관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왔고, 과세관청은 가짜 세금계산서 색출 등에 막대한 행정력이 투입되는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여 왔음.

이에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세금계산서를 전자적으로 발급함으로써 이러한 납세협력비용 및 행정비용을 절약하고자 2008년 말 세법개정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도입(2010년부터 시행)하였음.

- 이처럼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과 함께 사업자의 협력 부담완화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도

원 미만이 된 개인사업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입하였는데, 당시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인프라를 갖춘 법인사업자만을 의무발급 대상으로 하였으나, 이후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 등을 비롯한 전년도 공급가액 합계액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도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그 대상을 확대 왔으며, 대부분의 의무대상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15년 12월 31일에 동 특례는 일몰되었음.

그러나 2022년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의 범위가 ‘직전년도 공급가액 합계액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서 ‘공급가액 합계액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확대되는 점을 감안하여 새로운 납세협력의무가 부과되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세액공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직전년도 공급가액 합계액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특례를 신설하였음.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및 세액공제 제도 연혁]

개정연도	개정 주요내용
'08.12.26.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및 국세청 전송의무 신설 - 적용대상: 법인사업자('10.1.1부터) - 발급 세액공제: 건당 100원(한도 100만원) - 국세청 전송기한: 세금계산서 교부일 다음달 10일(미전송·지연전송 가산세 신설)
'10. 2.28.	'11.1.1부터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10.12.30.	세액공제액 인상: 건당 100원 → 200원
'11. 9.29.	-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범위 축소 - 복식부기의무자 →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개정연도	개정 주요내용
'12. 1. 1.	▪ 일몰 연장: '11년말 → '13년말
'12. 2. 2.	▪ 국세청 전송기한 - 공급일의 다음달 15일까지 → 발급일의 다음 날
'13. 1. 1.	▪ 미전송·지연전송 낮은 가산세율* 일몰 연장(법인 '13년까지, 개인 '16년까지) * (미 전 송) 법인 '12년까지 0.3%, '14년부터 1.0% 개인 '16년까지 0.3%, '17년부터 1.0% (지연전송) 법인 '12년까지 0.1%, '14년부터 0.5% 개인 '16년까지 0.1%, '17년부터 0.5%
'14. 1. 1.	▪ 법인사업자 적용 제외 ▪ 일몰 연장: '13년말 → '15년말
'14. 2.21.	▪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확대 ('14.7.1.적용) -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 3억원 이상
'15.12.15	▪ '15년말 일몰 종료
'16.12.31	▪ 미전송·지연전송 낮은 가산세율 일몰 종료
'19. 1. 1	▪ 미전송(1% → 0.5%) / 지연전송(0.5% → 0.3%)
'21. 2.17	▪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확대 ('22.7.1.적용) -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 2억원 이상
'22. 1. 1	▪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확대 ('23.7.1.적용) - 직전연도 공급가액 2억원 이상 → 1억원 이상
	▪ 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 재도입, 공급가액 3억원 미만 개인사업자에 한정 ('22.7.1.적용)
'23. 2.28	▪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확대 ('24.7.1.적용) - 직전연도 공급가액 1억원 이상 → 8천만원 이상

자료: 기획재정부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하면 단기적으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수단을 마련하거나 변경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식¹³⁾에 적응하기 위한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므로, 개정안은 이를 보전하기 위한 측면이 있음.

13)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은 ① 국세청 홈택스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홈택스에서 발급하는 방법, ② 국세청에 등록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대행사업자(ASP)가 일정수수료를 받고 운영하는 사이트 또는 자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ERP)을 이용하여 발급하는 방법, ③ 그 밖에 전화 ARS를 이용하거나 세무서 대리발급 방법 등이 있음.

또한, 동 특례를 통해 3억원 미만의 개인사업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이 활성화되면 장기적으로는 사업자가 복잡·다양화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종이 세금계산서를 수동으로 작성·보관·신고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세무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과세당국은 세원관리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정책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동 특례를 연장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이 보편화된 측면이 있고, 발급의무대상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시 가산세를 납부해야¹⁴⁾ 한다는 점에서 조세특례의 실질적인 유인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고, 2024년 7월부터 직전연도 공급가액 8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개인사업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에 특례의 대상을 1억원 미만의 개인사업자로 축소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60

14)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가목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함.

4. 조세포탈사업자 대상 부가가치세 수시부과 근거 신설

(박홍근의원안, 정부안)

현 행	개정안
☐ <신 설>	☐ 조세포탈사업자 대상 부가가치세 수시부과 근거 신설(제57조의2) ○ 부과사유 - 제60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 재화·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등을 발급·수취하는 경우 · 공급자·공급받은 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수취하는 경우 · 실제보다 과다하게 공급가액을 기재하는 경우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부과기간: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 박홍근의원안 2024. 10. 28. 발의(의안번호 4961), 정부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28)

☐ 개정안은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사업자 또는 포탈할 우려가 있는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시부과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함)을 발급하거나, ②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수취하거나, ③ 실제보다 과다하게 공급가액을 기재하거나, ④ 그 밖에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부가가치세를 수시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수시부과’란 과세기간 종료 전에 조세포탈 우려 등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 대상기간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제도¹⁵⁾로서, 현행 「소득세법」 제82조¹⁶⁾, 「법인세법」 제69조¹⁷⁾ 등에서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수시부과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가가치세 포탈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소위 ‘먹튀 사업자’의 경우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사업한 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는 방식으로 조세를 탈루하고 있으나,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과세기간이 종료된 이후 신고기한을 기다려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게 되므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납세자의 재산이 없어 체납액만 양산되는 문제가 있는데, 개정안에 따를 경우 이러한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현행 제60조제3항¹⁸⁾ 각 호에서 규정한 조세포탈 우

15) 대법원 1989. 11. 24. 선고 89누372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6) 「소득세법」

제82조(수시부과 결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거주자가 과세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시로 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이하 “수시부과”라 한다)할 수 있다.

1. 사업부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는 때로서 소득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③ (생략)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주소·거소 또는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 부과할 수 있다.

17) 「법인세법」

제69조(수시부과 결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수시부과사유”라 한다)로 법인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이하 “수시부과”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18) 「부가가치세법」

려가 있는 경우 외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수시부과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조세의 수시부과는 침익적 행정행위로서 그 근거를 포괄적으로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시행령에서 규정하려는 내용이 대강이라도 예측될 수 있도록 ‘주소·거소 또는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같이 그 내용의 일부를 법률에 상향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60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5.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강화(박홍근의원안, 정부안)

현 행	개정안
☐ 가산세(제60조) ○ 사업자 또는 국외사업자 - 명의 위장등록 : 공급가액 합계액 × <u>1%</u> ※ 간이과세자: 공급대가 합계액 × <u>0.5%</u>	☐ 명의위장등록 가산세 강화 ○ 사업자 또는 국외사업자 - 명의 위장등록 : 공급가액 합계액 × <u>2%</u> ※ 간이과세자: 공급대가 합계액 × <u>1%</u>

* 박홍근의원안 2024. 10. 28. 발의(의안번호 4961), 정부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28)

☐ 개정안은 사업자 또는 국외사업자(이하 “사업자등”이라 함)가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사업을 하는 경우 공급가액 합계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동일한 경우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공급대가 합계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하려는 것임.

☐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제2호¹⁹⁾ 및 제68조의2²⁰⁾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사업을 하는 사업자등에게 공급가액 합계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간이과세자에게는 공급대가 합

19)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① 사업자 또는 국외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

20) 「부가가치세법」

제68조의2(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 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에 관하여는 제60조제1항·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제3호·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0조제1항 각 호 중 “공급가액”은 “공급대가”로, “1퍼센트”는 “0.5퍼센트”로 본다

계약의 0.5%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있음.

-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는 ‘명의위장’은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통해 부당한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거나, 실제보다 더 큰 비용으로 처리함으로써 조세포탈의 가능성이 높는데, 매년 약 2천여 건의 명의위장 사례가 적발되고 있는 실정임²¹⁾.

개정안에 따르면 명의위장에 대한 가산세를 현행 위장세금계산서 발급과 같은 수준²²⁾으로 강화함으로써 조세포탈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60

21) 명의위장 적발건수: ('18) 2,216건 → ('19) 2,324건 → ('20) 1,881건 → ('21) 2,098건 → ('22) 1912건 (자료:기획재정부)

22)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